

익명조합계약서(샘플)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별지 1 의 사업에 관한 출자, 손익분배, 정보제공 및
종료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구분	당사자
영업자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본점: [] 대표자: []
조합원	성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본점: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제 1 조 목적과 계약의 성격

① 조합원은 영업자가 자기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는 별지 1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을 위하여
금전을 출자하고, 영업자는 대상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영업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조합원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다. 조합원은 본 계약만으로 영업자의 주주, 업무집행자 또는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대상사업 외의 영업자의 영업성과는 손익분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대상사업에 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본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잔액이 감소할 수 있다.

영업자는 사업성과와 관계없는 출자금 전액의 반환이나 확정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자의 계약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및 확정된 정산금 지급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조건과 계약기간

① 대상사업, 출자금, 납입일정, 이익분배율, 손실분담률, 계약기간, 전용계좌 및 사업예산은 별지 1 에 정한다. 이익분배율과 손실분담률은 각각 대상사업 전체 이익 또는 손실 중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비율이며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② 계약기간은 별지 1 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종료일 전에 연장기간과 정산조건을 기재한 서면에 영업자와 조합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업 미완료나 정산 지연만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③ 별지는 본 계약의 일부이다. 별지의 금액·비율·일정 등 개별 조건은 해당 사항에 관하여 적용하되, 본문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는 조항과 내용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도로 서명하여야 한다. 미기재 사항을 영업자가 일방적으로 보충할 수 없다.

제 3 조 출자금 납입의 선행조건

①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의무는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고 영업자가 그 증빙을 제공한 때 발생한다. 조합원은 특정 조건을 서면으로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면제가 영업자의 진술이나 그 밖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1 의 필수조건과 별지 2 의 공개사항 확정. 나. 영업자의 적법한 내부 승인 및 계약체결 권한 확인. 다. 대상사업 권원, 필요한 인허가 또는 그 취득계획, 주요 계약과 자금조달 증빙 제공. 라. 전용계좌 개설 및 조회자료 제공체계 마련. 마. 별지 2 에서 납입 전 이행하기로 정한 담보 등의 설정과 대항요건 구비. 바. 제 5 조의 진술·보장이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을 것.

③ 영업자는 각 납입예정일 5 영업일 전까지 조건 충족자료를 제공한다. 자료가 늦게 제공되거나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조합원은 납입을 유보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지체책임·위약금 또는 권리회색을 부담하지 않는다. 조건 충족 후 실제 납입일은 자료 검토에 필요한 5 영업일을 보장하여 조정한다.

④ 별지 1 의 선행조건 충족기한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합원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조건부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조건 충족 전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영업자는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종료 통지 도달일부터 5 영업일 이내 반환한다.

제 4 조 출자 범위와 추가 부담의 제한

① 조합원은 선행조건이 충족된 때 별지 1 의 금액을 전용계좌로 납입하고, 영업자는 납입일부터 2 영업일 이내 영수증과 출자금 계정 내역을 제공한다. 영업자의 약정 자기자금은 별지 1 의 일정에 따라 실제 투입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약정 출자의무는 별지 1 의 출자총액을 한도로 한다. 사업비 증가, 손실, 공사 지연, 차입금 만기 또는 영업자의 자금 부족만으로 추가 출자·대여·보증·담보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출자는 금액, 대가, 손익비율 및 기존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한 별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추가 출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기존 출자잔액, 이익분배율, 담보 또는 정보열람권을 줄이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추가 자금은 영업자가 조달하되, 새로운 차입이나 투자자 유치가 제 8 조에 해당하면 조합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원은 별도의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없는 한 영업자나 대상사업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또는 중요사항 동의를 채무인수나 보증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 5 조 영업자의 진술과 보장

① 영업자는 계약체결일과 각 납입일 현재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가. 적법하게 존속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행 권한을 갖출 것. 나. 제출자료가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실을 누락하지 않았을 것. 다. 대상사업의 자산·권리에 관한 소유권, 담보, 압류, 처분제한 및 제 3 자 권리를 별지 2 에 빠짐없이 공개하였을 것.

② 영업자는 기존 투자자와 채권자, 상환·분배 우선순위, 관계인 거래, 미지급 사업비, 조세체납, 주요 소송 및 인허가 장애를 별지 2 에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영업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체결한 계약을 대상사업의 비용으로 부담시키려면 그 내역과 인정 금액을 별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상 매출·수익률·사업기간은 합리적 근거와 주요 가정을 함께 제시하며 확정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영업자는 대상사업과 자금모집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는 위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오류를 알게 된 때 2 영업일 이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보완자료를 제공한다. 조합원의 실사 또는 자료 수령만으로 미공개 사실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 6 조 출자재산의 귀속과 대외적 관계

① 납입된 출자금과 이를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한다. 전용계좌와 별도 장부는 자금관리 및 정산을 위한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 조합원에게 소유권·신탁수익권·우선변제권 또는 영업자의 도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 조합원은 법령상 달리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자의 영업행위로 제 3 자에게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 ③ 영업자는 조합원의 별도 서면승낙 없이 조합원의 성명·상호를 영업자의 상호에 사용하거나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대표자·보증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본 계약으로 그러한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며, 법정 신고나 적법한 투자자 확인에 필요한 신원 제공은 그 승낙과 구별한다.

제 7 조 사업 수행과 자금관리

- ① 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별지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대상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조합원의 사전 동의권은 투자 보호를 위한 계약상 통제권이며, 일상적인 업무집행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출자금, 매출대금, 환급금, 보험금 및 그 밖의 대상사업 수입은 전용계좌로 수납하고, 사업비도 원칙적으로 그 계좌에서 지급한다. 현금 거래는 불가피한 소액 경비에 한하여 증빙과 수령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영업자는 자금을 다른 사업이나 영업자·임직원·관계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증여하지 않는다. 대상사업과 무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상사업의 수입·자산을 다른 사업에 이전하여 손익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영업자는 전용계좌 거래내역을 조합원이 전자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회전용 권한을 제공한다. 계좌 변경·폐쇄, 전용계좌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은 조합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한다. 이 조항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통제 약정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 8 조 사전 동의사항

- ① 영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기 전에 목적, 거래상대방, 금액, 손익 영향 및 대안을 기재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의 목적·범위·주요 일정 변경. 나. 별지 1 의 한도를 넘는 예산 증액 또는 항목 간 전용. 다. 별지에 없는 차입·보증·담보 제공. 라. 신규 투자자 유치, 다른 투자자의 우선권 설정 또는 조합원의 권리·분배비율 변경. 마. 영업자의 임직원·주주·계열회사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바. 사업의 양도·중단, 중요 자산의 사업 외 처분 또는 권리 포기. 사. 중대한 분쟁의 화해와 채권 감면. 아. 별지 2 에 정한 지배권 또는 핵심인력 변경.

③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상품·부동산의 매각은 별지의 가격·조건 범위 내에서 영업자가 수행한다. 그 범위를 벗어난 저가 매각, 관계인 거래 및 주요 담보권의 설정·해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목적의 거래를 분할하여 동의 기준을 회피할 수 없다.

④ 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 예정일 5 영업일 전까지 동의를 요청한다. 조합원의 침묵이나 회신 지연을 동의로 보지 않는다.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행위는 즉시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투자·사업확대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자는 1 영업일 이내 사유와 집행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고와 자료열람

① 영업자는 매월 말일부터 10 영업일 이내 전용계좌 전체 거래내역, 수입·지출 명세, 예산 대비 집행표, 주요 계약·인허가 진행상황, 차입·담보 현황 및 출자잔액표를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분기 종료 후 20 영업일 이내 대상사업 손익계산서와 자산·부채 명세를 제공한다.

② 영업자는 압류, 지급정지, 주요 계약 해제, 사업 중단, 인허가 취소, 중대한 소송, 예산 부족 또는 예상 손실을 알게 된 때 2 영업일 이내 그 영향과 대응계획을 통지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증으로 월별 보고를 대신할 수 없다.

③ 조합원 및 조합원이 지정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3 영업일 전 통지로 업무시간 중 대상사업의 장부, 증빙, 전자자료 및 현장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다. 횡령 의심, 자료 변조, 재산 은닉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자는 지체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 ④ 영업자는 다른 사업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필요한 자료 전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관련 없는 부분의 가림처리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자료는 종료정산 후 10 년 또는 법정 보존기간 중 긴 기간까지 보관한다.
- ⑤ 통상적인 보고·장부작성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조합원이 별도로 의뢰한 점검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되, 중대한 위반이나 정산금의 5% 이상 오류가 확인되면 합리적인 범위의 점검 비용을 영업자가 부담한다. 적법한 자료열람을 영업방해나 공동경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 10 조 사업손익과 비용의 산정

- ① 계약상 사업손익은 대상사업에 귀속되는 수익에서 이 조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영업자 전체의 결손금이나 다른 사업 손익을 합산하지 않는다.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되 최초·최종 연도는 실제 계약기간에 따른다.
- ② 매출, 이자, 환급금 및 기타 수익은 발생 원인과 귀속기간에 맞게 인식한다. 자산 취득대금은 취득 즉시 전액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매각원가·감가상각비 등으로 적정하게 반영하며, 동일한 지출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분배를 위한 이익에는 실현되지 않은 단순 평가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비용은 대상사업에 직접 필요하고 실제 발생하였으며 적격증빙이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서 승인 예산에 포함된 항목에 한한다. 영업자의 일반관리비, 인건비 배부, 업무수행 보수와 관계인 거래대가는 항목·산식·상한을 별지 1 에 명시한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관련 약정이 없으면 별도 보수나 관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조합원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자체는 분배기준 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출자금의 납입·원금반환, 차입원금의 수령·상환도 그 자체로 수익·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자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영업자가 부담하며 분배기준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고, 투자자의 원천징수세액도 사업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 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미공제 부가가치세와 대상사업에 직접 귀속하는 취득세·재산세 등은 적법한 비용 또는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영업자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과징금·가산세·벌금과 제 18 조의 손해는 조합원에게 전가할 비용 또는 정상사업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⑥ 세무상 소득금액·손금과 계약상 분배기준 손익이 다른 경우 영업자는 차이의 항목과 근거를 별도로 제시한다. 세무신고서의 특정 계정명만으로 계약상 이익분배액이나 원금반환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 11 조 손실분담과 출자잔액

- ① 조합원은 대상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손실 중 별지 1 의 손실분담률에 따른 금액만 부담한다. 분담액은 조합원의 출자잔액 감액으로 반영하며,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에서 적법하게 반환받은 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초과액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 ② 영업자는 납입액, 원금반환액, 조합원에게 배분한 손실 및 그 회복액을 각각 기록한다. 조합원의 출자잔액은 “실제 납입액 – 적법한 원금반환 누계액 – 조합원에게 배분된 미회복손실액”으로 계산하며 0 원 미만으로 하지 않는다.
- ③ 이후 이익이 발생하면 미회복손실을 우선 보전한다. 복수 출자자의 미회복손실이 있으면 각 미회복손실액의 비율에 따라 보전한 후 남은 이익에 이익분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손실을 비용 공제와 출자잔액 감액에서 이중으로 부담시키거나, 회복된 손실을 다시 공제할 수 없다.
- ④ 출자잔액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출자금보다 커져도 조합원에게 추가 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거에 적법하게 확정되어 지급받은 이익을 후발적인 사업손실만을 이유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 허위자료에 의한 지급, 계산착오 또는 명시적으로 임시 지급한 금액의 정산은 별도로 판단한다.

⑤ 손실의 발생·금액·사업 관련성과 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장부·증빙을 영업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정상사업손실을 구별할 수 없는 자료만으로 조합원의 출자잔액을 감액할 수 없다.

제 12 조 이익분배와 자금 지급순서

① 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5 일 이내 결산자료와 분배계산서를 제공하고, 같은 종료일부터 60 일 이내 미회복손실을 보전한 후의 조합원 귀속 이익을 별지 1 의 이익분배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견이 있으면 제 17 조 제 4 항의 검증절차에 따르되 다툼 없는 부분은 기한 내 지급한다. 분기 중간분배는 같은 기준에 따른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② 대상사업의 현금은 적법한 제 3 자 채무와 승인된 사업비 지급, 합리적으로 필요한 운영·우발채무 준비금 확보, 약정된 출자잔액 반환, 확정된 이익분배 순으로 사용한다. 계약 종료 시 출자잔액 반환은 제 17 조에 따른다. 계약기간 중 원금반환은 금액·기준일과 향후 손익비율을 정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영업자의 자기투입금 반환과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인출은 조합원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출자반환금 및 이익분배금 지급보다 후순위로 한다. 다른 투자자와의 순위는 별지 2 에 정하며, 영업자는 신규 계약에도 그 순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약정은 법정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동의하지 않은 제 3 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준비금은 구체적인 지급사유, 산정자료와 해제예정일을 제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승인예산에 없는 준비금 또는 그 초과액은 조합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한다. 영업자는 매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사유가 소멸한 금액은 10 영업일 이내 지급재원에 반영한다.

⑤ 영업자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분배를 유보하려면 제 2 항의 자금수지를 증빙하여야 하고, 유보기간 중 자기자금 회수·주주배당·관계인 대여를 우선할 수 없다. 조합원은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산 전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까지 거절하지 않는다.

⑥ 영업자는 이익분배금을 조합원의 별지 1 계좌로 지급한다. 법정 원천징수 외의 공제·상계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반대채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13 조 회계처리와 세금

① 영업자는 출자금·출자반환금·이익분배금·손해배상금을 구분하여 장부와 지급명세에 표시한다.

출자금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처리하며,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적인 원금반환 보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금반환 자체를 이익분배 비용이나 용역비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② 이익분배액은 법정 원천징수 전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자는 조합원의 개인·법인 여부 및 지급 당시 법령과 거래 실질에 맞추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세법상 이자소득 등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본 계약의 민사상 권리·의무를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지 않는다.

③ 진정한 출자원금의 반환액과 과세대상 이익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지급명목만을 원금반환으로 정하여 실제 이익을 원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영업자는 지급일 3 영업일 전까지 총액, 소득구분, 세율, 세액 및 실지급액의 계산서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증빙을 법정 제출·납부기한 후 5 영업일 이내 제공한다.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조합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⑤ 조합원의 소득에 대한 본세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영업자의 신고·납부 지연이나 오류로 생긴 가산세·가산금 및 추가 손해는 영업자가 부담하되, 조합원이 제공한 허위정보 등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한다. 영업자는 자기 법인세 또는 자기 귀책 가산세를 조합원의 분배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⑥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환급이 있으면 실제 귀속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동일 세액을 중복 부담시키지 않는다. 영업자는 이의신청·경정청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영업자는 요건 검토 및 조합원의 별도 서면동의 없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거나 조합원의 과세상 지위를 변경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다.

제 14 조 담보와 권리보전

- ①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목적물·권리자·순위·피담보채무·설정기한을 별지 2 에 명시하고 별도 담보계약과 등기·등록·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피담보채무는 본 계약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출자잔액 반환채무, 이익분배금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등으로 특정한다.
- ② 담보 약정 또는 전용계좌만으로 물권이나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자는 설정 전 권리관계 자료와 설정 후 증빙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해당 담보를 해지하거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조합원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의·회계검증 절차는 보전처분, 소멸시효 보전 또는 긴급한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 15 조 계약상 지위와 사업의 이전

- ① 영업자는 조합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상사업 또는 본 계약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제 3 자에게 의무를 이전하지 못한다. 중요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영업자의 계약상 책임은 유지된다.
- ② 조합원이 사업 이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영업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적 계약인수는 조합원이 면책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영업자의 면책을 승낙하지 않고 사업 이전을 승인하는 경우, 영업자는 이전 전에 양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별도 3자 합의서를 체결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와 장래의 정산·손해배상채무의 인수 범위를 특정하고, 영업자와 양수인이 그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계약만으로 서명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채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④ 조합원은 영업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영업자는 양수인의 법령상 결격, 자금의 적법성 또는 비밀보호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않으며, 자료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 사유를 붙여 답변한다. 조합원의 사망 또는 포괄승계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으며 승계인은 필요한 증빙을 제공한다.

제 16 조 계약의 종료와 해지

① 본 계약은 기간 만료, 대상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 당사자의 서면합의 또는 법령상 종료사유로 종료한다. 상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권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10 영업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때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가. 지급·보고·열람의무의 중대한 위반. 나. 승인 없는 예산 변경이나 동의사항 위반. 다. 약정 자기자금 미투입 또는 담보 미설정. 라. 중요 진술·보장의 위반. 마. 그 밖에 계약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의무 위반.

③ 자금 유용, 중요한 자료의 고의적 허위·은폐, 재산 도피, 자료 파기 또는 사후 시정으로 투자 보호를 회복할 수 없는 위반이 있으면 조합원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인허가의 최종 거부·취소, 장기간의 객관적인 사업 불능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다.

④ 영업자는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조합원이 약정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서면 최고 후 10 영업일 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부분과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추가 출자 거절이나 적법한 정보·동의권 행사는 해지사유가 아니다.

⑤ 당사자의 도산·회생·파산과 관련한 종료·권리행사는 해당 절차의 강행규정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이미 발생한 채무, 정산의무, 손해배상, 자료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7 조 종료정산과 출자잔액 반환

① 영업자는 종료일부터 30 일 이내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부채 명세, 미회복손실, 출자잔액, 미지급 이익 및 세금 명세를 포함한 정산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하고, 종료일부터 60 일 이내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한다. 조합원이 연장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산금은 본 계약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잔액과 미지급 이익분배금을 합하고,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을 중복되지 않게 공제하여 산정한다. 별지 3 의 양식에 따라 원금, 이익, 손실 및 세금을 구분한다. 출자잔액 반환은 정상사업손실을 반영한 금액의 반환이며 최초 출자원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③ 미매각 자산·미회수 채권은 종료일 현재의 합리적인 회수가액으로 평가하고, 실현에 필요한 직접 비용과 확정·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업채무를 중복 없이 반영한다. 영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거나 자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산가액을 0 원으로 평가하거나 정산을 무기한 미룰 수 없다.

④ 정산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는 자료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해관계 없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적격 전문가를 공동 선정하여 검증한다. 선정에 10 영업일 이내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 법원에 판단·감정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재판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종료정산·평가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⑤ 다툼 없는 금액은 제 1 항의 기한 내 우선 지급한다. 미확정 채권·채무 때문에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과 한도를 특정하고, 확정·회수 또는 유보사유 소멸일부터 10 영업일 이내 추가 정산한다. 다른 정산항목을 일괄 유보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권리포기 확인서의 서명을 지급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⑥ 조합원에게 현물 인수나 자산 명의이전을 강제하지 않는다. 현물 정산을 하려면 대상, 평가액, 권리하자, 세금과 비용을 정한 별도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최종정산금 지급만으로 영업자의 미공개 위반이나 누락 자산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제 18 조 계약 위반의 책임과 지연손해금

① 영업자가 허위설명, 목적 외 사용, 무단 담보·양도, 부당한 관계인 거래, 자료 은폐 또는 그 밖의 계약 위반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러한 손해를 정상사업손실로 처리하여 조합원의 출자잔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액은 위반행위,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따라 정한다. 계약 종료나 사업 실패만으로 최초 출자원금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대로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영업자의 위반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정산금과 손해배상으로 같은 손해를 중복 전보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정산금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기일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강행법규상 한도를 넘지 않으며, 다른 법률상 지연손해금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순한 출자기간 경과만으로 출자원금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협력한다. 불가항력은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비금전 의무의 지연에 관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나 사고 통지·자료보존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다.

제 19 조 비밀유지와 통지

① 당사자는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의무, 법원·과세관청 등의 적법한 요구, 권리행사,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제공은 허용한다.

② 통지는 별지 1 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지위 이전, 동의 및 계약 변경에 관한 통지는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주소 변경 미통지의 효과도 실제 도달 또는 법령상 도달 간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③ 본 계약의 서면에는 작성자와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계약 변경, 출자총액·비율 변경, 채무면제, 담보 해지 및 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로 한다.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을 말한다.

제 20 조 준거법과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되, 무효 부분이 계약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면 당사자는 원래 목적과 조합원의 보호 수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대체조항을 협의한다.

②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대상과 범위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별지 1 에 정한 대한민국 법원을 제 1 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되, 법정 전속관할과 강행규정은 따른다.

계약 체결

영업자와 조합원은 본문과 별지 1 부터 별지 3 까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각 1 부를 보관한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완전한 계약서와 서명 검증자료를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영업자	조합원
상호: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인)
주소: []	주소: []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한다. 별도의 개인 보증계약 없이 그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인 조합원의 경우 대표자란은 삭제한다.

별지 1 기본조건과 사업예산

필수조건은 출자금 납입 전에 모두 기재한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는다. 이 별지의 기입만으로 본문의 조합원 보호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항목	합의 내용
대상사업 및 소재지	사업명: [] 사업 범위·대상 자산·소재지: []
기간과 기한	계약 개시일: [] 종료일: [] 선행조건 충족기한: []
조합원의 출자총액	금 []원 (₩[])
납입일정	제 1 회: []원 / []년 []월 []일 제 2 회: []원 / []년 []월 []일 분할 납입이 없으면 제 2 회란에 “없음” 표시
영업자의 자기자금	금액: []원 실제 투입일: [] / 증빙: []
손익비율	조합원의 이익분배율: 대상사업 분배대상 이익의 []% 조합원의 손실분담률: 정상사업손실의 []% 나머지 손익 귀속 및 다른 투자자 비율: [] 각 이익비율 합계와 손실비율 합계를 각각 100%로 기재

항목	합의 내용
전용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영업자 계좌번호: []
조합원의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사전 동의 기준	총예산 증액: 누적 []% 또는 []원 초과 항목 간 전용: 항목별 누적 []% 또는 []원 초과 미기재 시 모든 증액·항목 간 전용에 사전 동의 필요
매각 기준	승인된 통상 매각의 대상·최저가격·조건: [] 기준 미기재 시 중요 자산 매각은 개별 사전 동의 필요
관할법원	[] 법원
통지처	영업자: 주소 [] / 이메일 [] 조합원: 주소 [] / 이메일 []

승인 사업예산

항목	승인액	비용 인정 기준 또는 증빙
자산 취득·개발비	[]원	[]

별지 2 공개사항과 권리보전 조건

영업자는 아래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추후 협의”나 포괄적인 자료제공만으로 공개를 마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개 항목	구체적 내용과 첨부자료
자산과 권원	대상 자산·소유자·취득 경위·권리제한·등기자료: []
인허가와 주요 계약	필요 인허가·취득 여부·조건 / 매매·도급·임대차 등 주요 계약: []
차입금과 담보	채권자·잔액·금리·만기·담보·보증·기한이익 상실 조건: []
다른 투자자와 순위	투자자·실납입액·이익분배율·손실분담률·상환/분배 순위: [] 조합원보다 우선하는 약정의 존재 및 내용: []
관계인 거래	관계·계약내용·대가·시가 근거·조합원의 동의 범위: []
기지출 비용	납입 전 비용 중 대상사업에 반영할 항목·금액·증빙: []

공개 항목	구체적 내용과 첨부자료
위험 및 분쟁	조세체납·소송·압류·인허가 장애·예산 부족·기타 중요 위험: []
지배권과 핵심인력	사전 동의가 필요한 지배권 변경 기준 및 핵심인력: []
설정할 담보	목적물·담보권자·순위·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설정기한: [] 설정하지 않으면 “담보 없음” 명시
납입 전 이행사항	제 3 조에 따른 추가 선행조건 및 확인자료: []

특약

변경 조항과 내용: [] (없으면 “없음” 표시)

첨부자료 목록: []

영업자 확인: [] (인) 조합원 확인: [] (인)

별지 3 출자잔액과 정산금 명세

대상 기간: [] ~ [] 정산 기준일: []

작성자: [] 작성일: []

구분	금액	근거 또는 확인사항
A 실제 납입 누계액	[]원	납입일별 계좌 증빙 첨부
B 원금반환 누계액	[]원	이익분배금과 구별
C 조합원의 미회복손실액	[]원	배분손실에서 회복액 차감 제 11 조의 한도와 증빙 확인
D 조합원의 출자잔액	[]원	$A - B - C$ / 최저 0 원
E 미지급 이익분배금	[]원	대상사업 손익·손실회복·분배율· 기지급 이익 내역 별첨
F 원천징수세액	[]원	과세대상금액·소득구분·세율· 기납부세액 구분
G 합의된 유보액	[]원	항목·산정근거·해제일 특정 포괄적인 유보 금지
이번 실지금액	[]원	$D + E - F - G$ 중간정산이면 D 중 지급합의액만 반영

